

## 5 용역계약 관련 판례 · 유권해석



### 국토교통부 (2019.5.13)

제목 : 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총회 의결사항인지

【질의 요지】

신설 및 용도폐지 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조합 총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 평가업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2019.5.13)

제목 :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시 상하수도, 전기, 가수 등의 철거 공사 관련

【질의 요지】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시 철거 공사(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범위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에는 정비구역내 철거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철거대상 시설물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철거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수반되는 경우라면 각 시설물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